

2019년 2분기 숙련기능인력 점수제(E-7-4) 비자 선발 계획 안내

숙련기능인력(E-7-4) 점수제 비자 선발 시 선착순 허가 방식에 따라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19년 2분기 선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○ 선발인원 : 125명(연간 총 일반쿼터 500명 중 분기별 균분 선발)

※ 단, 별도쿼터(500명) 중 아래 ①의 경우 쿼터 소진 시까지 수시 선발, ②의 경우 부처 추천시기에 따라 다름

① 200명 : 65점 이상 고득점자와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(10인 이상 전년대비 10%이상 고용) ② 300명 : 관계부처 추천 자(고용노동부 200명, 농림수산부 50명, 해양수산부 50명)

○ 신청기간 : '19. 4. 1(월) ~ 4. 3.(수), 3일간

○ 서류제출 요령 및 결과

- 제출방법 :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
- 결과발표 : 법무부 홈페이지(www.hikorea.go.kr) 공지사항 게시판에 발표 예정
(2분기 : 4월 10일 10시)

○ 대상자 선정 기준(전국사무소 신청자가 125명을 초과한 경우에 한함)

- 1차 : 총점이 높은 신청인
- 2차 : 동점자가 생긴 경우 범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우선 제외
- 3차 : 한국어 능력(TOPIK, KIIP)이 우수한 사람 우선 선발
- 4차 :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신청인, 5차 : 연령이 적은 신청인

○ 신청자 주의사항

- 동 제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직장을 새롭게 오픈하는 경우 3개월간 신청이 제한됩니다.
- 고득점자에 대해 우선 선발(쿼터 배정)하므로 점수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.
- 신청서 접수 시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심사를 하지 않으며, 심사 중 서류가 미비한 경우라도 보완요청 없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신청 시 각별히 주의를 바랍니다.

- 심사결과가 공지되면 신청의 반려·철회 등이 제한되며, 접수증이 교부된 수수료 환불은 불가하며, 제출서류도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신청 결과 선발이 불허되었어도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.
- 재발급이 어려운 학위증 등 문서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공증받은 원본 서류에 대해 이미 법무부에 제출한 경우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하며, 사본이 없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제출 생략 사유를 신청서에 특이사항으로 기재 하셔야 됩니다.
- 예약 없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무소가 혼잡하여 오랜시간 대기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예약 후에 방문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.
- 신청인의 점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붙임 하단의 『별첨 점수제 전환 심사표』를 작성하여 신청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 접수시 점수가 미달인 경우에는 점수가 되지 않습니다.
- 뿌리기업의 경우 뿌리기업 확인서(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장 발행) 하단에 “2000.XX.XX부터 뿌리기업임을 증명합니다” 라는 형식의 별도 표기가 없으면 하단의 발급일로부터 경력을 기산합니다. 중간부분의 사업개시일이 뿌리 기업 확인 기산일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소득증명은 2016년 및 2017년 2년간의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서상의 급여가 평균 2,600만원이 넘어야 신청요건이, 이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201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상의 소득을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고 있습니다.
 - ☞ 단, 2분기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가 5월에야 발급되는 점을 감안하여, 전년도 소득 증명을 다음의 두가지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예외적으로 인정하며, 이는 **2분기 신청자에 한 하여 적용함** ① 세무사회계사가 발행한 전년 소득 신고확인 서류 + ② 회사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 서류
- 부처 추천의 경우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단, 고용부 추천자는 접수기간(4.1 ~ 4.5)에만 접수를 받습니다.
- 주의 : 외국인 고용인원 산정시 E-7, F-2 체류자격자를 모두 포함하므로 주의. F-2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의 제한을 받지 않을 뿐이지 E-7 자격 소지자라고 보면 됩니다. E-9, E-10, H-2, F-4, 결혼이민자, 영주권자만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합니다.

<붙임 1> 별첨 5.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

숙련기능인력(E-7-4) 점수제 평가 항목

□ 적용대상 :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-9, E-10, H-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

- 제외 : 형사범, 세금체납자,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

<참고> : 단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

□ 점수요건 : 총 18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

1. 산업기여가치의 ‘숙련도’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
2. 기본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

가. 기본항목 : 최대 80점

1). 산업 기여 가치

◆ 숙련도 : 최대 20점

구 분	연간소득①			자격증 소지②			기량검증 통과③
	3,300만원 이상	3,000만원 이상	2,600만원 이상	기사	산업 기사	기능사	
배 점	20	15	10	20	15	10	10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<범례> : ①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소득(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)

②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,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규칙 별표2의 “기술·기능분야” 기술자력에 한함

③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

2). 미래 기여 가치

◆ 학력 : 최대 20점

구 분	학사이상	전문학사	고졸
배 점	20	10	5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<범례> :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

◆ 연령 : 최대 20점

구 분	~ 24세	~ 27세	~ 29세	~ 32세	~ 34세	~ 39세
배 점	20	15	10	7	5	2

◆ 한국어능력 : 최대 20점

토픽(TOPIK)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			
5급/5단계 이상	4급/4단계 이상	3급/3단계 이상	2급/2단계 이상
20	15	10	5

<참고> : 토픽은 공식점수표(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), 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

나. 선택항목 : 최대 100점

◆ 보유 자산 : 최대 35점

구 분	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①			국내 자산②		
	1억원 이상	6천만원 이상	3천만원 이상	1억원 이상	8천만원 이상	5천만원 이상
배 점	15	10	5	20	15	10

<참고> : ①와 ②간 중복 산정 가능(단, 이 경우 ②는 ①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)

<범례> : ①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
 ②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(토지/주택/건물)만 해당
 ①와 ②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

◆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: 최대 15점

구 분	뿌리산업 분야 및 농·축산·어업 분야 ①		일반 제조업, 건설업 분야 등②	
	6년 이상	4년 이상	6년 이상	4년 이상
배 점	15	10	10	5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<범례> : ①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·축산·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만 인정

◆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: 최대 10점

구 분	국내 교육경험①		국내 연수경험②	
	학사이상 취득	전문학사 취득	1년 이상	6개월~1년 미만
배 점	10	8	5	3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<범례> : ①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
 ②는 국내 사설기관연수(D-4-6)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

◆ 가점 : 최대 40점

구 분	국내 유학경험 ①			관련 중앙부처 추천 ②	읍, 면지역 근무경력 ③			사회 공헌 ④		납세실적 (300만 원이상) ⑤
	석사 이상	학사 이하	전문 학사		4년 이상	3년 이상	2년 이상	표 창	사회 봉사	
배 점	10	5	3	10	10	7	5	5	3	5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

<범례> : ①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'학위소지' 및 '학력'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(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)

②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,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

③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, 면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

④ (훈포장/표창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(건당 2점, 최대5점), (자원봉사)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(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-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) : 표창/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(어느 하나만 적용)

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

다. 감점항목 : 최대 50점

구 분	출입국관리법 위반①			기타 국내 법령 위반②		
	1회	2회 이상	3회 이상	1회	2회 이상	3회 이상
배 점	5	10	50	5	10	50

<참고> : 항목 간 합산(①+②)점수를 적용함

<범례> : ①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(처벌면제, 경고 및 과태료 포함)하며,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

②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

라. 업종·업체별 허용인원

허용인원		1명	2명	3명	4명	5명
업종별	일반	10 - 49명	50-149명	150-299명	300-499명	500명 이상
	뿌리	5-9명	10-29명	30-49명	50-99명	100명 이상
제조업 (국민고용보험자 수)						
건설업 (연평균 공사금액)		50억원 미만	50-300 억원 미만	300-500 억원 미만	500-700 억원 미만	700 억원 이상
농축어업 (상시근로자 수)		30명 이하	31-99명	100명 이상	-	-

<참고> 단, 현재 E-9 및 E-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

□ 기타 참고

◆ 2018년 쿼터 : 일반 쿼터 500명, 별도 쿼터 500명

- 일반쿼터는 분기별로 125명씩 고득점순 운영하며, 별도 쿼터는 1월2일부터 선착순 운영
- 별도쿼터 중 200명은 65점 이상 고득점자 및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(10인 이상 전년대비 10%이상 고용)이 대상이고, 나머지 300명은 관계부처추천자가 대상임

<붙임 2> 별첨 5의 제출서류 목록 안내 (민원인용)

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제출서류 목록

【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주의사항 】

가.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(신청자 필독)

- 총 쿼터 : 일반 500명 + α (별도 상한 500명)
- 일반분야 : 분기별로 125명씩 운영하고,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므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별도분야 : ① 점수가 65점 이상이거나 국민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별도쿼터(200명) 소진시 까지 분기별 쿼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, 관계부처 추천 쿼터(300명)의 경우 관계부처 추천시기에 따라 별도로 점수를 받습니다. ② 별도쿼터 중 국민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년도 대비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(고용보험 3개월 이상) 평균 10% 이상을 고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1명을 추가로 고용 할 수 있습니다.
- 점수항목에 포함된 학력, 자격증, 한국어 능력점수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추후 기간연장 시 점수가 부족하여 한국어, 학력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에는 자격변경 이후 변화된 사항(자격변경 이후 학력변화, 연수, 한국어능력 검증 등)만 인정하게 되므로 제출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본항목에서 한국어 점수, 학력 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점수제 숙련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연장 신청시 점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.(☞ 잦은 이직 등으로 임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)
- 숙련기능(E-7-4) 비자는 준전문직에 속하므로 급여요건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 이상입니다. (☞ 정부의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이 확인될 경우 체류허가 등이 제한됩니다)
- 동 제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직장을 새롭게 옮기는 경우 3개월간 신청이 제한됩니다.

나. 기본서류

- 통합신청서(별지 34호)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수수료 13만원, 표준규격 사진 1장, 신원보증서(별지 129호), 고용사유서(활용계획서), 표준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고용보험가입자명부(또는 4대 사회보험가입장 가입자 명부), 결핵검진확인서(해당자)
- ※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일 것(근무시간 및 시간당 임금, 기본급 명시)

다.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 입증 서류

- 제조업(뿌리산업체 포함) :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
- 건설업 : 공사금액 입증 서류
- 농림축산어업 : 농업경영체등록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

【 해당 외국인의 점수제 입증 서류 】

가. 기본항목

1) 산업기여 가치

◆ 숙련도

① 연간소득 : 세무서장 발행 **소득금액증명원** (전년도 2년간)

- 정산기준일이 일치하지 않아 부득이 세무서의 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보충적으로 활용 가능

※ ex) 2019년 상반기 신청시 2016년 및 2017년 소득금액증명원 합계 평균이 2,600만원을 넘어야 하며, 이를 충족할 경우 2018년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보충적으로 활용 가능

② 자격증 : 해당 **자격증 원본**(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)

※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원본

③ 기량검증 : 기량검증 시행기관의 **기량검증 합격(통과) 증서**

※ 현재 기량검증은 뿌리산업분야만 가능하며 뿌리산업의 경우 ‘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(☎ 02-2183-1635)’ 에서 기량검증확인서 발급

2) 미래기여 가치

◆ 학력 : 학위증(학사이상) 또는 졸업장(고졸) 원본(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)

- 전문학사 및 학사의 경우 **학위증만 인정**(기술학원 졸업증, 기술교육 이수증, 전문기술 자격증 등 불인정) 단, 필요시 교육기간 확인을 위해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

※ 정규과정(4년 이상 출석수업)이 아닌 국내 체류중 원격대학, 온라인대학, 개방대학, 국제대학 등 통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가점 불인정

- 국외에서 발행한 서류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후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 공관 영사확인 받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

◆ 한국어능력 : 토픽의 경우 공식점수표(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),

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의 경우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

나. 선택항목

◆ 보유 자산

① 정기적금 : 해당 은행발행 해당계좌 **거래내역 조회서**(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)

※ 최종 납일사항이 정리된 적금통장 원본도 추가로 제시(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)

② 부동산소유 : **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** 제출(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유효)

◆ 최근 10년 이내 국내 근무경력 : 해당 업체발급 재직증명서(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) 또는 관련분야 경력증명서

- 이전 직장 폐업 등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이 경력진술서(임의양식)를

작성하여 법무부에서 근무이력 확인을 통해 보충적으로 대체 가능

- 단, 뿌리분야 경력은 반드시 해당업체 뿌리산업 증명서가 첨부
- 재직증명서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, 재직기간,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

④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에 근무 중인 자만 인정

- 해당 분야 종사자의 경우 해당 업체의 **뿌리산업 증명서**로 입증

◆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

① 국내 학위취득 : **학위증 사본**(학위증 원본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)

② 국내 사설연수 : 해당교육기관 발급 **연수확인서**(교육과정, 교육기간 등 명시)

- D-4-6 허용 연수기관에서 주 8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료(출석율 80% 이상)하였을 경우에 가점 부여

◆ 가점

① 국내 유학경험 : **학위증 원본**(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)

②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추천 : 해당부처 발행 **고용추천서**

- 중앙부처 추천 기준 및 접수는 각 부처별로 개별적인 기준에 따름

③ 읍·면지역 근무경력 : 해당 업체발급 **경력(재직)증명서*** 및 **사업자등록증 사본**

* 소재지 명시, 비고란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, 재직기간,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

④ 사회공헌

- ▶ 표창 : **표창장 원본**(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)

※ 표창이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에게 주는 증서와 부상으로 정부표창을 의미함, 그러므로 감사장, 공로패 등은 제외

- 표창은 국가기관(중앙부처의 장) 및 지방자치단체장(국회의원, 지방의회, 글로벌센터장, 부시장, 다문화센터장 등 표창은 제외됨) 명의의 정식표창을 의미
- 동일 기관장 명의의 다수 표창은 1개만 인정, 표창 수여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제출자에게 입증 책임 있음

- ▶ 사회봉사 :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(☎1365)발급 실적확인서, 단,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발급 **사회봉사 확인서**(봉사내용 및 봉사기간 등 명시)

⑤ 납세실적 : 세무서장 발행 지난 1년간 **소득세 납세증명서**

◆ 감점항목

⑥ 필요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<별첨1> 점수제 전환 심사표 - 신청인 작성 서식

[참고서식]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[E-7-4] 항목별 심사표

성 명		등록번호	
회사명		국 적	
기본요건	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-9 국내 정상 취업 여부 ()		
점수요건	① 숙련도 10점 이상 총 득점 52점 이상() ② 필수 35점 총득점 72점 ()		

구분			평가점수	심사내용(입증서류 등)
기 본 항 목	산업기여 가치	연간소득		
		자격증소지		
		기량검증		
	미래기여 가치	학 력		
		연 령		
		한국어 능력		
선 택 항 목	보유자산	정기적금		
		국내자산		
	근무경력	뿌리산업분야		
		일반제조업 등		
	교육, 연수	교육경험		
		연수경험		
	가점	국내유학경험		
		부처 추천		
		음면지역 근무		
		사회공헌		
		납세실적		
	감점	출입국관리법 위반		
		기타 국내법 위반		
총점				

작성일 : 2019. . .

작성자 :

(서명)

<별첨2> 고용창출 우수기업 심사표

[참고서식]

국민 고용창출 우수기업 심사표

회사명		사업자등록 번호	
작성자	(서명)	연락처	

가. 고용증가율 자료 심사 자료

A(1구간) : 직전 1년간(12개월)의 평균 국민 상시 근로자 수

월별	-1월	-2월	-3월	-4월	-5월	-6월	-7월	-8월	-9월	-10월	-11월	-12월	평균
상시 고용 인원													

○ 월별 : 신청일 기준 직전 12개월

☞ '18년 9월 신청시에는 직전 12개월이므로 '17년 9월 ~ 18년 8월 동안임

○ 상시고용인원 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국민 근로자 수

☞ 국민 고용을 의미하며, 외국인(외국인등록번호 소유자)은 제외

☞ 인원산정 결과 평균이 소수점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(12.254 => 12.3명)

B(2구간) : 직전 1년전(전전년) 12개월간의 평균 국민 상시 근로자 수

월별	-13월	-14월	-15월	-16월	-17월	-18월	-19월	-20월	-21월	-22월	-23월	-24월	평균
상시 고용 인원													

○ 월별 : 신청일 기준 직전 1년전 12개월간(13개월 ~ 24개월전까지)

☞ '18년 9월 신청시에는 직전 13개월~24개월이므로 '16년 9월 ~ '17년 8월 동안임

☞ 평균 인원이 소수점인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(10.454 => 10.5명)

나. 심사 결과 [신청자는 이 부분을 작성하지 마세요]

구분	A (직전1년)	B (2년이내)	C 증가율(%) (A-B)/B × 100	충족여부
상시 고용 인원	12.3	10.5	$(12.3-10.5)/10.5 \times 100$ =17.142	17% 증가 하였으므로 충족

☞ C의 증가율은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함 (9.5% => 10% 이므로 요건 충족함)

본인은 상기 제출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하며, 향후 외국인근로자 기간연장시 자격변경 허가 때 제출한 고용증가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추가 고용 인력에 대해 기간연장이 불허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.

작성일 :

확인자(대표) :

서명

첨부 : 최근 2년간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빙 서류

※ 첨부서류는 심사가 완료되면 허가 수령시 반환하게 되며, 2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.

<별첨3> 신청시 제출서류 (順으로 정리하여 제출)

1. 신청서,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(필수)
2. 점수제 전환 심사표(필수)
3. 고용창출우수기업 심사표(해당자에 한함)
4. 세무서 발행 소득증명서(2년치 - 필수)
5. 근로소득원천징수서류(최근 3년간, 해당자에 한함)
6. 자격증 및 기량검증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7. 학위증(해당자에 한함)
8. 토픽 자격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(해당자에 한함)
9. 정기적금 입증서류(해당자에 한함)
10. 국내 자산 입증서류(해당자에 한함)
11. 재직증명서 및 (관련분야)경력증명서
12.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(4대보험가입자명부로 대체 가능)
13. 사업자 등록증 사본
14. 뿌리기업 인증서(해당자에 한함)
15. 국내 교육 및 연수 경력 입증서류(해당자에 한함)
16. 중안관계부처장의 고용 추천서(해당자에 한함)
17. 사회공헌입증서류(해당자에 한함)